

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) 채용관련 최종합격자 발표

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 2018-27호 및 30호 관련,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 근로자(사무보조) 채용공고의 최종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.

2018년 5월 2일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□ 최종합격자

- 이0선(응시번호 : 13)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
- 채용 신체검사서 1부(붙임 서식 참조)
- 여권사본 또는 신원진술서·개인정보제공동의서·기본증명서(붙임 서식 참조)
 - ※ 작성 주의사항 : 서명 시 본인이름 정자로 서명, 기본증명서 발급 시 '상세'(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다 표시)로 발급
 - * 여권사본을 제출하실 경우 신원진술서, 개인정보동의서, 기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□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

- 제출 기한 : 5. 4.(금)
- 제출 방법 : 등기우편 또는 방문
- 제출 장소 :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기간제채용담당자(044-200-7198)
 - ※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

□ 유의사항
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결과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<서식 2>

(앞쪽)

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 (한 자)	()	사 진 (3cm × 4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가슴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안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치 아		호 흡 기 질 환	
간 질 환		신 경 질 환	
소 화 기 질 환		피 부 질 환	
순 환 기 질 환		정 신 질 환	
비 뇨 기 질 환		혈 청 검 사 (매 독)	
흉 부 X선 검 사		기 타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 합 격 [] 불 합 격 [] 판 정 보 류	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	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 (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“검사 내용”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“정상”, “양호”, “이상 없음” 등으로 적어야 함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“합격” 또는 “불합격” 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3. “검사 결과 합격 여부”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“√”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- ‘매독(syphilis)’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-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 에 해당하지 않음
 -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‘혈소판 감소 자색반’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- ※ 판정 보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17.2.22.>

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성명		한자		주민등록번호		[사진]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
등록기준지						
주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락처	직장전화 : 휴대폰 : E-mail :	
국적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한민국	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국적 국가명: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국적 국가명:	배우자 및 자녀 국적		
특기	취미			자격증		
재산	본인 및 배우자	부동산 : 만원, 동산 : 만원, 채무 : 만원				
	미혼 자녀	부동산 : 만원, 동산 : 만원, 채무 : 만원				
정당·사회 단체 활동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단 체 명	기 간	직 책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	. . . ~ . . .			
병역	본인	군 별	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미필 사유
					. . . ~ . . .	
	자 (성명)				. . . ~ . . .	
	자 (성명)				. . . ~ . . .	
학력	학 교 명	기 간	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
		. . . ~ . . .				
		. . . ~ . . .				
		. . . ~ . . .				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-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
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-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 본인(가족 포함)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법령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 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 성명 (서명)

- 본인 및 가족 동의 (자녀는 결혼·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,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)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서 명	
	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본인			자필서명	자필 서명
배우자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(밑줄은 민감정보)

본 인(예시)	가 족(예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, 공무원인사기록(행자부·인사처) ■ 주민·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 ■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■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■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■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■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(행자부) ■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■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■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■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■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